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7월 04일

발 의 자 : 최호정,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승복,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윤희,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76명)

1. 제안이유

-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 방송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하여 티비에스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은 이 조례의 발의 당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이하 재단)에 소속된 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용 중이거나 신설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신분이나 급여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조(자산 등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이라도 시장은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재단이 향후 독립된 언론으로서 지속할 수 있도록 자산 정리에 있어 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